

FTA BRIEF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주요 내용과 전망

Vol. 08
OCTOBER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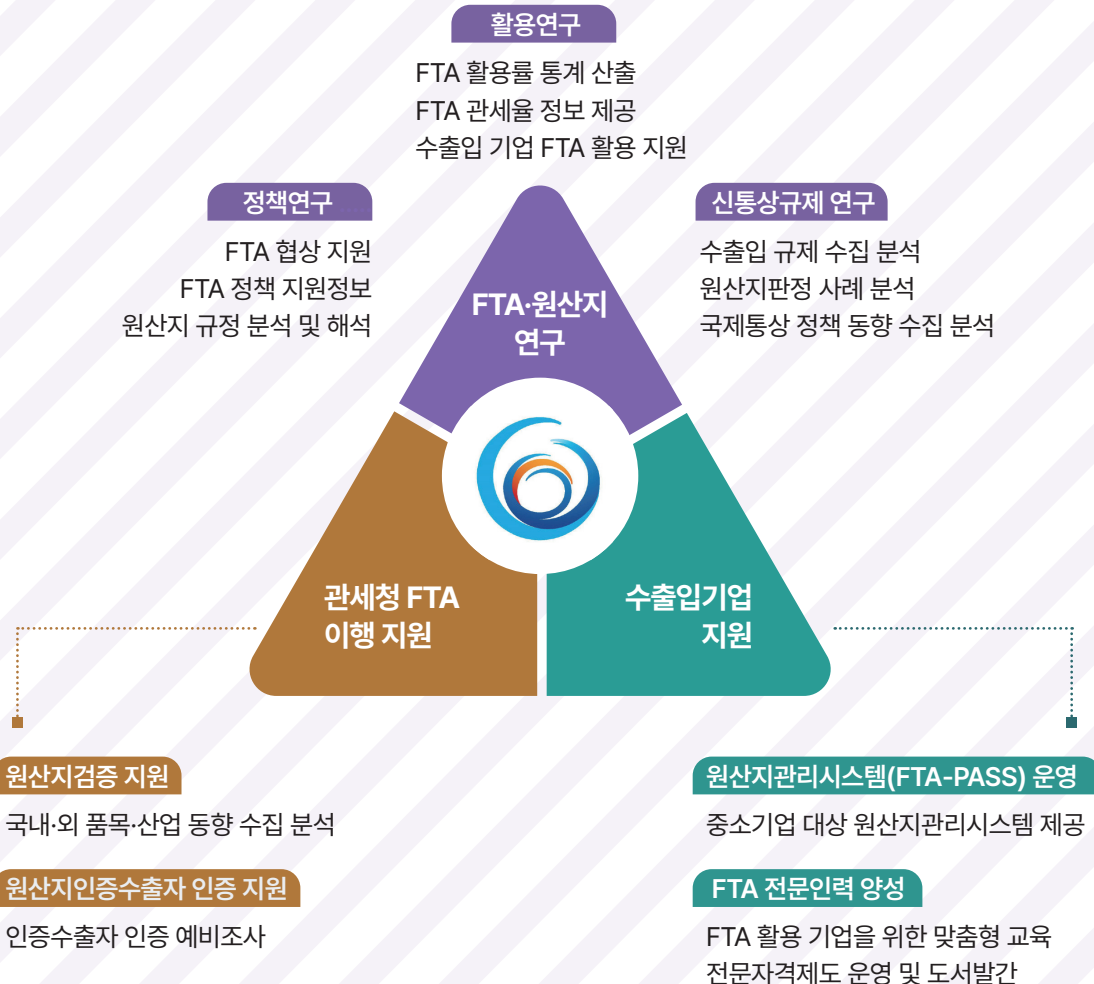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FTA 원산지 동향 ISSUE

평택직할세관

I	미국 시장 동향 및 수출 시 유의사항	01
	1. 미국 식품 시장 동향	01
	2. 수출 시 유의사항	07
II	일본 시장 동향 및 K-푸드 수출 전략	15
	1. 일본 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	15
	2. 일본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일 수출 전략	19
	3. 대일 수출 시 유의 사항	22
III	K-푸드 수출 동향 및 수출 지원사업 안내	27
	1. K-푸드 수출동향	27
	2. K-푸드+수출 확대 전략	31
	3. aT 전략체계	32
	4. aT 수출지원사업	33
IV	식품 수출 시 필요 인증 및 취득지원사업 안내	37
	1. 서언	37
	2. 인증 필요성 & 인증제도 구분	38
	3. 주요 인증제도	38
	4. 주요 인증 취득 지원제도	48
V	식품업계 수출통관 유의사항	53
	1. 개요	53
	2. 수출 선적서류 샘플	55
	3. 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방법	61
	4. 수출통관 상세	62
	5. 식품업계 수출통관 유의사항	66
	6. 수출신고 사후관리	68
VI	K-푸드 수출 성공 사례 - 쌀과자 달집, 일본 시장에 도전하다.	73

* 사진 출처 : 평택 세관

관세청, K-푸드 수출 전략 가이드북 발간

- ☑ 평택직할세관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K-푸드 수출 전략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2026.9.22. 발간)
 - 해당 가이드북은 미국·일본의 식품시장 동향과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K-푸드 수출 전략, 수출 지원사업, 식품 관련 인증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 예시로, 「식품업계 수출통관 유의사항」에서는 라면의 미국 수출 시 필요한 식품시설의 FDA 등록, 제품 표시사항 확인 및 사전 통보 절차를 안내한다.
 - 특히 영문 라벨에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알레르기·영양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설명하고, 필수 정보의 영문 미표기와 알레르기·영양정보 누락 등 부적합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이 수출 전에 점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 ☑ 우리나라 식품 수출기업은 이번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요 수출시장의 특성과 통관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과 제출서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주요 내용과 전망



[글_구준희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 EU 에코디자인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은 2024.07.18. 발효된 규정으로, 식품·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EU 시장의 모든 물리적 제품(부품·중간재 포함)에 대하여 위임법령을 통해 제품군별 에코디자인요건과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2025.04.16. 채택된 첫 실행계획(2025~2030)은 철강·알루미늄·섬유(의류)·가구·매트리스·타이어를 우선 제품군으로 지정함
- ✓ 2026.07.19.부터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액세서리·신발 폐기가 금지되었고, 2026.07.20.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부가 개시되어 제도가 준비 단계에서 이행 단계로 진입함
- ✓ 우리 기업은 완제품 수출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 공급기업도 적용 영향권에 들어오므로, 품목분류·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의 사전 정비 등이 필요함

1. 들어가며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EU 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제품이 설계되고 사용·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이다.

EU는 순환경제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20년 3월에 신순환경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편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2024년 7월 18일에 발효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이다¹⁾.

에코디자인규정(ESPR)은 종전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을 폐지·대체하였다. 종전 지침은 2003년 EU 통합제품정책(IPP)을 계기로 에너지 사용 제품과 에너지 관련 제품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에코디자인규정(ESPR)은 이를 EU 시장 내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하였다²⁾. 또한 특정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성능요건, 정보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Regulation (EU) 2024/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products, amending Directive (EU) 2020/1828 and Regulation (EU) 2023/1542 and repealing Directive 2009/125/EC

2)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탄소발자국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와 범위가 기존의 지침보다 확대되었다.

EU 역내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전체에 적용되므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과 그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협력사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에코디자인규정(ESPR)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입 및 추진 경과



2003년 EU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이하 'IPP')을 계기로 제품 관점의 통합적 환경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지침(2005/32/EC)과 2009년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 마련으로 이어졌다.

에코디자인지침(2005/32/EC, 2009/125/EC)은 가전·조명·모터 등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적용 대상이 에너지 관련 제품에 한정되고, 지침(Directive) 형식이므로,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³⁾.

2016년 파리협정 발효 후, 2021년부터 시작될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EU는 2019년 그린딜(Green Deal) 정책과 그 이행방안으로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도입하면서 순환경제 관점의 에코디자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EU는 2024년 7월에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을 도입하였다.

2022년 3월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규정(ESPR) 제안 이후 2023년 12월에 규정 도입 잠정 합의, 2024년 6월에 동 규정 채택을 거쳐 동년 7월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규정 내 제품별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은 실행계획과 위임법령 채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에코디자인이 EU 내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특정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성능·정보 요건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288조에 따라 규정(Regulation)은 별도의 국내법 전환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나, 지침(Directive)은 달성결과만 회원국을 구속하고 그 형식과 수단은 회원국에게 위임하므로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이 필요하다.

[표 1] 에코디자인규정(ESPR) 도입 및 추진 경과 타임라인(Timeline)

일자	주요 내용
2003년	• EU 통합제품정책(IPP) 수립
2005.08.11.	•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지침(2005/32/EC) 발효
2009.10.21.	• 2005년 지침을 개정하여 에너지 관련 제품까지 범위를 확대한 에코디자인지침 마련(2009/125/EC)
2019.12.11.	• EU 집행위원회, EU 그린딜(Green Deal) 발표
2020.03.11.	•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채택 • 지속가능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 SPI) 제시
2022.03.30.	• 에코디자인규정(ESPR) 제안
2023.12.05.	• EU 의회 및 이사회, 에코디자인규정 도입 잠정 합의 • 미판매 의류, 신발 폐기 금지 조항 추가
2024.07.18.	• 기존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을 대체하는 에코디자인규정(2024/1781) 발효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녹색공공조달 등 도입
2024.11	• EU 에코디자인포럼(Ecodesign Forum) 발족
2025.04.16.	•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에너지 라벨링 첫 실행계획(2025~2030) 채택 • 철강, 알루미늄, 섬유, 가구, 매트리스, 타이어 등 우선 품목 선정함
2026.02.09.	• 미판매 제품 폐기 하위법령(이행·위임규정) 채택 • 이행 규정 : 미판매 제품 폐기 공시 서식 • 위임 규정 : 미판매 제품 폐기 사유
2026.07.19.	•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이하 'DPP') 등록부(Registry) 구축 완료 기한 • 대기업 : 미판매 의류, 신발 폐기 금지 적용 • 중기업 : 2030.07.19.부터 적용 •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면제
2026.07.20.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부 가동 • 제품 고유식별자 등록 인프라 운영 개시
2027.02~03.	• (2027.02) 배터리 규정상 대형 배터리 디지털 제품 여권(DPP) 첫 이행 기한 돌입 (에코디자인규정의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 이용) • (2027.03) 미판매 소비재 폐기정보 공시를 위한 표준 양식 도입
2028	• 에코디자인규정 실행계획 중간검토 예정
2030	• 중기업 미판매 의류, 신발 폐기 금지 적용 및 공시 도입 예정(2030.07.19.)

※ 자료 :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규정 홈페이지, 'Implementing the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U 집행위원회 뉴스 자료, 'New EU rules to stop the destruction of unsold clothes and shoes',
 'The Digital Product Passport Registry is now live', 'The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moves into implementation'
 EADTrust, 'Digital Product Passport Registry Now Operational'

3. 에코디자인규정 (ESPR) 개요와 주요 내용



에코디자인규정은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탄소발자국과 환경발자국을 줄이고, 지속가능제품의 EU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규정 제1조).

총 14장 8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에코디자인에 대한 요건, 디지털 제품 여권(DPP), 녹색공공조달(GPP), 미판매 소비재 폐기 방지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코디자인요건은 제품군별 성능요건과 정보요건,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제품 데이터의 전자적 제공, 녹색공공조달 규정은 에코디자인규정 대상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최소요건, 미판매 소비재 폐기 방지 관련 내용에서는 폐기 정보 공시와 특정 품목 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품군별 에코디자인요건을 위임법령(Delegated Act)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Regulation)'이므로, 회원국 별도 국내법 제정 없이 EU 역내에 공통·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을 통하여 특정 제품군에 대한 에코디자인요건을 위임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해당 위임법령 적용일은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후가 된다. 위임법령에는 제품군 정의와 상품코드 목록, 에코디자인요건, 적합성평가 모듈, 기술문서 제출형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규정 제4조, 제8조).

적용 대상은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상품(부품, 중간재 포함)이며, 식품·사료,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 인체 유래물 및 차량(분야별 법령이 규율하는 측면에 한함) 등은 제외된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중간재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므로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이 에코디자인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 에코디자인지침과 에코디자인규정 비교

구분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법적형식	• 지침(Directive, EU 회원국 국내법 전환 필요)	• 규정(Regulation, EU 전역 직접 적용)
대상제품	• 에너지 사용 제품, 에너지 관련 제품 (가전, 조명, 모터 등)	• 식품, 의약품,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제품(부품, 중간재 포함)
주요요건	• 에너지 효율성, 일부 자원 효율성	• 내구성, 수리가능성, 재생원료, 재활용성, 탄소발자국, 환경발자국 등 16개 제품 측면
정보제공	• 라벨, 제품설명서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라벨, 웹사이트 등
신규제도	-	• 미판매 소비재 폐기 금지 및 공시 • 녹색공공조달 의무 요건
요건마련	• 제품군별 이행조치 도입	• 실행계획에 따른 제품군별 위임법령

● 자료 : 에코디자인지침(Directive 2009/125/EC),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1) 에코디자인요건

에코디자인요건은 성능요건과 정보요건으로 구성된다. 위임법령에는 두 요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제품군별로 지정하고 있다.

성능요건은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과 같이 일정 수준 충족을 요구하는 요건이고, 정보요건은 재생 원료 비율을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기재하는 등 표준화된 데이터를 일정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고 한다.

[표 3] 에코디자인요건 내 성능요건, 정보요건 및 적합성평가 개요

구분	개요	주요 요구사항
성능 요건	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제조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술적 요건	내구성 및 신뢰성, 수리 및 유지보수 용이성, 자원 효율성 및 재생 원료 사용, 재활용 가능성, 환경영향
정보 요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망 내 환경 관련 정보를 추적 가능하도록 하며, 제품의 올바른 폐기 처리를 돕기 위한 데이터 공개 의무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유해우려물질 (Substances of Concern) 추적, 수리 및 폐기 정보제공, 성능 등급 라벨링
적합성 평가	에코디자인요건 충족을 입증하고 CE 마킹(CE Marking) ⁴⁾ 을 부착하여 EU 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	적합성평가 실시,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기술문서 보관(10년), CE 마킹 부착, 필요 시 제3자 인증

* 자료 : 법무법인 세종(2026년 주목해야 하는 ESG 규제 (3) EU 에코디자인규정)

적합성평가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이 규정상의 친환경설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이다(규정 제4조). 즉, 위임법령상의 에코디자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증명하여 서류로 남기는 과정이다(규정 제2조 제51호). 적합성 평가의 절차와 평가주체 및 모듈은 다음과 같다.

4) 에코디자인규정 관보 게재본(OJ L, 2024/1781) 전문 제84항에는 에코디자인요건이 채택된 제품의 CE 마킹이 그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E 마킹(CE Marking)은 제품이 EU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생산자가 스스로 선언하는 적합성 표시로, 프랑스어로 유럽 적합성(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이다. 즉, CE 마킹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받은 것에 대한 증표라고 볼 수 있다(EU 집행위원회 CE marking, 검색일자 : 26.09.28).

[표 4] 적합성평가 절차와 평가주체

구분	내용
절차	① 위임법령이 제품군별 요건을 정함 ② 생산자가 출시 전에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수행함 ③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 마킹 부착함 ④ 수입자·유통업자가 이 서류와 CE 마킹을 확인하고 시장에 판매를 위하여 출시함
평가주체	• 에코디자인규정 제4조 제5항에서는 적합성평가 주체를 내부 자체 평가(모듈 A)와 제3자 인증기관 위탁 수행(모듈 B~H1)으로 나누고 있음 - (모듈 A) 생산자가 자기 책임으로 확인(규정 제4조 제5항, 부속서 IV) - (모듈 B~H1) EU 제품 판매를 위한 일반 체계(Decision No. 768/2008/EC)에서 명시하는 제3자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관여하는 형식⁵⁾ • 제품 위험도나 요건의 성격에 따라 모듈이 달라짐

* 자료 :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EU 제품 판매 공통 체계를 정한 결정(Decision No. 768/2008/EC)

두 요건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제품 측면(Product aspects)은 16개이다(규정 제5조, 부속서 I). 위임법령은 해당 제품군에 관련되는 경우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가능성, 유지보수·재생 가능성, 유해우려물질 함유, 에너지·물·자원 사용 및 효율, 재생 원료 함량, 재제조·재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정한다.

특히 정보요건에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관련 요건과 유해우려물질 요건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수리점수·내구성점수·탄소발자국·환경발자국 등이 추가된다. 유해우려물질은 명칭, 제품 내 위치, 농도 등을 통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EU 신 화학 물질 관리제도⁶⁾'에서 식별하고 있는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은 제품 내 농도가 0.1% 초과 시 정보요건 면제를 받을 수 없다(규정 제7조).

[표 5] 에코디자인요건 16개 제품 측면(부속서 I)

구분	내용
절차	•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수리가능성, 유지보수·재생(refurbishment) 가능성
유해성	• 유해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함유 (명칭, 제품 내 위치, 농도 등을 통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추적 가능 필요)
자원이용	• 에너지 사용·효율, 물 사용·효율, 자원 사용·효율, 재생원료 함량, 재제조 가능성, 회수 가능성
환경영향	• 탄소발자국, 환경발자국 등 환경영향, 폐기물 발생 예상량

* 자료 : 에코디자인규정(ESPR, (EU) 2024/1781) 제5조 및 부속서(Annex) I

5) 인증기관이란 에코디자인규정 제9장(적합성 평가 기관 통지)에 따라 지정된 적합성 평가기관을 의미하며, 적합성 평가 기관은 교정, 시험, 인증 및 검사를 포함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6)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EU 신 화학물질관리 제도'로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제도이다(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색일자 : 26.09.28.)

2)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위임법령이 정한 제품 데이터를 QR 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위임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은 디지털 제품 여권이 마련되어 있어야 EU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은 지속적으로 고유 제품 식별자에 연결되어야 하고, QR 코드 등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는 제품·포장·동봉문서 중 위임법령이 정한 곳에 있어야 하며, 데이터는 개방형 표준 기반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규정 제10조).

위임법령은 디지털 제품 여권을 어느 수준까지 작성할지,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 등을 제품군별로 지정한다. 고객, 생산자, 수입자, 수리업자, 재활용업자, 시장감시기관과 세관 등은 권한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규정 제9조, 제11조).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에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Registry)를 구축하였으며, 자유 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 등록부에 상품코드가 저장된다. 또한 에코디자인규정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령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되는 데이터 외에 등록부에 저장하여야 하는 기타 데이터를 명시하여야 한다(규정 제13조).

세관은 등록식별자와 상품코드가 등록부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자유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증은 EU 세관 단일창구 인증서 교환시스템(EU CSW-CERTEX)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계는 관련 이행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가동되어야 한다(규정 제15조)⁷⁾.

한편 등록부는 원칙적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 데이터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고유 식별자와 실제 데이터 저장 위치를 연결하는 색인(index) 역할을 한다. 또한 세관 통관 단계에서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 여부가 확인되므로, 디지털 제품 여권은 통관 요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규정 제13조 및 제15조).

7) EU CSW-CERTEX는 세관 단일 창구 인증서 교환시스템(Customs Single Window Certificates Exchange System, 이하 'CSW-CERTEX')의 약자로,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DG TAXUD)이 EU 회원국과 협력해 개발 및 관리하는 중계 시스템이며, EU 세관 단일창구 환경(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EU 세관 단일창구 환경은 Regulation (EU) 2022/2399에 근거한 세관과 비관세 당국 간 협력을 위한 체계로, EU 비관세 시스템(검역, 환경 등), 회원국별 국가 세관 단일창구, 이 둘을 이어주는 EU CSW-CERTEX로 구성된다. 이 중 CSW-CERTEX를 통하여 통관 시점에 서류 확인 및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다. (EU 집행위원회 The EU Single Window Environment for Customs, 검색일자 : 26.09.28)

[표 6] 디지털 제품 여권(DPP) 작동 구조

구분	주체	주요 내용
DPP 생성	생산자, 수입자(또는 디지털 제품 여권 서비스 제공자)	위임법령이 정한 데이터 항목을 수집·작성하여 저장
등록부(Registry) 등록	경제주체	고유식별자, 상품코드 등 등록 데이터를 EU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에 등록
식별자 발급	EU 집행위원회(등록부)	고유 등록식별자 생성
데이터 캐리어 부착	생산자·수입자	QR 코드 등을 제품·포장·동봉문서에 부착
통관·시장감시	세관, 시장감시기관	EU CSW-CERTEX 연계를 통하여 등록식별자·상품코드 일치 여부 확인

※ 자료 :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제9조~제15조,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이행 규정((EU)2026/1778)

3) 미판매 소비재 폐기 방지

에코디자인규정(ESPR)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미판매 소비재의 폐기를 방지할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미판매 소비재를 폐기하는 경제주체는 연간 폐기 수량·중량, 폐기 사유, 재사용 준비(재생, 재제조 포함)·재활용·에너지 회수·처분 비율, 폐기 방지 조치를 공시하여야 한다(규정 제23조~제24조).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부속서 VII 품목(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 폐기를 금지하였고, 중기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폐기가 금지될 예정이며,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제외된다(규정 제25조).

‘폐기’는 고의적 훼손 또는 폐기물로 버리는 행위를 뜻하며,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waste hierarchy)에서 후순위에 해당하는 재활용·기타회수·처분이 포함된다. 재사용 준비(재생·재제조 포함)를 위한 반출만 제외된다(규정 제2조).

EU 집행위원회는 미판매 소비재 폐기 방지와 관련하여 건강·안전·위생, 수선 불가능한 손상, 용도 부적합, 기증 거부, 재사용 준비 부적합,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환경영향 최소화 등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위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규정 제25조 제5항). 이에 따라 2026년 2월에 예외 위임규정과 공시 형식에 대한 이행규정을 채택하였으며, 공시 표준 양식은 2027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이하 ‘GPP’)

녹색공공조달(GPP)은 에코디자인규정(ESPR)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하여 공공조달의 최소 의무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요건은 기술사양, 낙찰기준, 계약이행조건 또는 목표치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규정 제65조).

5) 경제주체별 주요 의무

에코디자인규정에서는 생산자(제27조), 수권대리인(제28조), 수입자(제29조), 유통 및 판매자(제30조~제31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제35조), 원격 판매(제36조) 등 경제주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설계·생산을 맡기고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EU 역내외를 불문하며, 한국 기업이 직접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생산자와 관련하여 제품식별, 연락처 표시, 디지털 사용 설명서, 불만 소통 채널과 등록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처리 방안,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권대리인은 생산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 특정 업무를 대리하는 자로서, 위임 가능한 업무는 당국과의 협력, 관련 자료 제출 등 최소한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⁸⁾.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로는 성능·정보요건을 충족하는 설계와 제조, 디지털 제품 여권(DPP) 마련과 기술문서 작성이며, 대리인을 두어도 핵심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

수입자는 EU에 설립되어 제3국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품 출시 전 생산자가 에코디자인 적합성평가를 마치고 기술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요구 정보와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품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렇게 믿을 사유가 있을 경우 적합해질 때까지 출시하지 않는다.

유통업자는 생산자·수입자가 아니면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로, 공급 전에 CE 마킹, 디지털 제품 여권(DPP) 연결, 필수 문서와 사용설명서, 생산자·수입자 표시를 확인하며, 부적합이 의심되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유통업자 자신이 출시한 제품이 규정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령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회수·리콜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전시하는 자로, 원격 판매도 포함하며, 고객이 관련 정보와 디지털 제품 여권(DPP)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벨을 눈에 띄게 표시하며 혼동을 주는 라벨은 쓰지 않아야 한다.

8) 에코디자인규정 제28조 (a)~(d)에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 (a) 제4조에 따라 채택된 위임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후 10년 동안 EU 적합성 선언 및 기술 문서를 국가 시장감시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위임법령에서 다른 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 (b) 수권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규정 미준수 사례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해당 국가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국과 협력한다.
- (c) 관할 국가 당국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국이 제품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해당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15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d) 생산자가 본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⁹⁾상의 일반 의무를 가지며, 시장감시기관 요청 시 부적합 제품 조치에 협력한다. 그리고 시장감시기관과의 단일 연락창구를 두어야 한다.

원격 판매와 관련하여 온라인 등 원격으로 판매할 때 제품 게시 화면에 생산자 이름·상표·주소·연락처, 생산자가 EU 밖에 있으면 EU 역내 경제주체의 이름·주소·전화번호, 제품 식별 정보(사진, 유형, 식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급망 행위자는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법령에 명시된 경우 요청이 있을 때 생산자·인증기관·관할당국에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 관련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생산자가 제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문서나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생산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자기 상표로 출시하거나, 적합성에 영향을 주도록 제품을 변경하면 생산자의 의무를 갖게 된다(규정 제34조).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EU 파트너 기업에게 OEM으로 공급하는 경우 EU 파트너 기업이 생산자 의무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한국 공급기업에게 설계 사양과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표 7] 에코디자인규정 내 경제주체별 주요 의무

구분	내용
생산자	• 성능·정보요건에 맞는 설계·제조, DPP(백업본 포함) 마련 • 적합성평가·기술문서·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 마킹 등
수권대리인	• 서면 위임 범위 내 기술문서·적합성 선언서 보관(10년) • 당국의 자료 요청 시 15일 이내 자료 제출 • 당국 조치에 협력(생산자의 설계·DPP 의무와 기술문서 작성은 위임 대상 아님) • 생산자가 의무를 어기면 위임 종료
수입자	• 적합성평가·기술문서·정보·DPP 확인, CE 마킹 확인 • 자기 상표로 출시하거나 제품을 변경하면 생산자로 간주
유통·판매자	• CE 마킹·라벨·DPP 연결 확인, 부적합 제품 미출시 • 고객의 정보·디지털 제품 여권 접근 지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시장감시기관 협조, 부적합 제품 관련 콘텐츠 삭제 명령 대상
원격 판매	• 생산자 정보 표시, 생산자가 EU 역외 소재인 경우 EU 내 경제주체 정보 표시
공급망 행위자	• 위임법령이 정한 경우 요청 시 제품 정보 무상 제공 • 정보 부재 시 생산자의 제품 평가를 위한 문서, 시설 접근 허용

● 자료 :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제27조~제38조

9)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

4. 제도 이행 및 국내 정책 동향



1) 첫 실행계획(2025~2030년)과 우선 제품군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에 에코디자인규정(ESPR), 에너지 라벨링 실행계획(2025~2030년)을 채택하였다.

주요 제품군은 철강과 알루미늄(중간재 대상), 섬유(의류 중심),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이며, 수리 점수를 포함한 수리가능성 요건과 전기·전자장비 재활용성 요건 등 수평 조치도 함께 도입된다(규정 제5조 제5항)¹⁰⁾. 신발은 별도 연구를 거쳐 향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화학물질 등은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았다¹¹⁾.

아래의 품목별 에코디자인 위임법령 채택예정연도는 실행계획상의 예정 시기이며, 제품별 위임법령 발효 후 최소 18개월의 이행기간이 주어지므로, 기업은 채택 시점부터 실제 적용 시점까지 준비 기간을 일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첫 실행계획 주요 제품군 및 위임법령 채택 예정 시기

구분	제품군	예정연도	개선 잠재성
중간재	철강	2026년	- 기후변화, 에너지소비, 물, 공기 등에 대한 영향 개선 - EU의 공급 회복탄력성, 기술 혁신 등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 존재
	알루미늄	2027년	- 기후변화, 에너지소비, 공기, 물, 생물다양성, 토양 오염 및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속 중 하나임 - 생산 과정에서 재생원료 투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가능
최종 제품	섬유(의류)	2027년	제품 수명 연장, 재료 효율성 향상, 수자원, 폐기물 발생,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음
	타이어	2027년	재활용 가능성 제고와 폐기물 관리 관련 위험 완화 및 재생원료 함량 개선 가능
	가구	2028년	자원 사용, 기후변화, 산성화, 부영양화, 폐기물 발생 등 개선 가능
	매트리스	2029년	폐기물 발생, 내구성, 재료 효율성 개선 가능
수평 조치	수리가능성 (소비자 전자제품, 소형 가전 등)	2027년	수리 범위와 자원 사용 범위에 따라 원자재 순환 증가, 기후변화, 내구성 개선 가능
	전기·전자장비 재생원료, 재활용성	2029년	원자재 순환성, 기후변화 및 폐기물 방지 가능

* 자료 : EU Commission,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and Energy Labelling Working Plan(2025-2030)' DPP Tool, 'ESPR Delegated Acts August 2026: Working Plan Status by Product Group & Timeline'

10) 수평조치(Horizontal measures) :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여러 제품군에 공통 적용되는 에코디자인요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청소기 등에 대한 수리가능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 등이 있다. 반대로 수직적 조치는 하나의 제품군(철강, 섬유, 타이어)별로 위임법령을 만들고 해당 제품에 대한 여러 측면(내구성, 탄소발자국 등을 규율함)을 규율하는 에코디자인요건을 말한다.

11) 그 외 에너지 관련 제품도 제품군에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냉장고, 식기세척기, 용접장비,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이 있다.

2) 미판매 소비재 하위법령 채택(2026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에 미판매 의류·액세서리·신발 폐기 방지를 위한 2개의 하위법령(이행규정, 위임규정)을 공개하였다. 이행규정은 폐기된 미판매 소비재 공시를 위한 표준 양식을 도입하였고, 위임규정은 안전상 이유나 제품 손상 등 폐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EU에서 매년 미판매 섬유류의 4~9%가 한 번도 착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며, 이로 인하여 약 56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추산하였다.

3)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부 개시(2026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부(Registry) 운영 규칙을 담은 이행규정((EU) 2026/1778)을 채택하고, 7월 20일에 운영을 개시하였다.

제품을 출시하는 경제주체는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에 제품에 대한 고유식별자와 상품 코드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규정 제13조 제4항). 등록부(registry)는 에코디자인규정(ESPR) 대상인 섬유, 철강·알루미늄, 타이어, 가구, ICT 및 에너지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건설제품, 완구, 세제 및 계면활성제에 대한 법령상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¹²⁾.

제품군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의무는 위임법령 발효 후 최소 18개월의 이행기간을 거쳐 적용되므로, 등록부(registry) 개시가 곧바로 모든 제품의 디지털 제품 여권 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첫 이행기한은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에 따른 일부 대형 배터리에 대한 이행 기한으로, 2027년 2월 18일까지 정하고 있다.

4) 철강에 대한 위임법령 준비(2026년 하반기)

철강은 에코디자인규정 제품군별 위임법령의 첫 대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에 철강 제품 에코디자인 위임법령 도입을 공개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임법령은 2026년 하반기에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위임법령 채택 시,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한 주요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등이 주요 요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2026년 8월에 공개 협의가 마무리된 후 총 22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위임법령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2) 예를 들어,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규정((EU) 2023/1542)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에코디자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제77조·제78조에서도 디지털 제품 여권과의 상호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제78조에서도 배터리규정 제77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는 경제 주체가 에코디자인규정 제13조의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에 고유식별자를 업로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부 시행 규정(2026/1778) 제1조에서도 배터리를 등록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5) 우리나라 정책 동향

우리나라 정부는 에코디자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¹³⁾.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재활용 저해 구조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기준 준수 등 제품별 환경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제품 환경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 제도가 EU와 정합성을 갖추어 도입된다면 국내에서 구축한 데이터와 인증을 EU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EU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 제품군별 영향

제품군 가운데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 비중이 큰 것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전자 제품이다. 이 중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에코디자인규정이 중첩 적용될 경우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BAM은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설비와 공정 단위로 요구하지만,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모델 단위의 소재 구성·재생원료 비율·탄소발자국 등을 요구하므로, 같은 데이터라도 산정 단위와 산출 방식이 다르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에코디자인 이행조치 ((EU) 2023/1670)가 적용되면서 배터리 내구성, 운영체제 업데이트 제공 기간, 예비 부품 공급 의무 등이 도입되었다. 이는 종전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에 근거한 조치로서, 에코디자인규정(ESPR) 시행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며, 2025년 12월 개정 규정 ((EU) 2025/2006)을 통하여 예비부품 인도기한 등 일부 내용이 정정되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은 에코디자인규정 실행계획(2025~2030년)에 명시된 제품군이며, 위임법령 채택은 2030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에코디자인규정(ESPR) 제79조가 구 에코디자인지침(2009/125/EC)의 이행조치로 규율되는 제품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 지침 조항의 적용을 유지하도록 한 경과규정과 맞물린다. 그에 앞서 향후 수평적 수리가능성 요건이 도입될 경우 대상 제품이 소형 가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13) 일상 속 제품의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이끄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착수(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6.04.28)

2) 기업 유형별 영향

무역분야 EU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합동 설명회 자료에서는 對EU 수출 기업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CBAM은 의무 주체가 EU 수입자로 고정되어 있어 '누구에게 수출하는가'가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

반면, 에코디자인규정(ESPR)은 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따라 의무가 귀속되므로, '누구의 상표로 EU 시장에 출시되는가'를 기준으로 유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형과 예상되는 부담을 분류해보면 [표 9]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수출하여 EU에 출시할 경우, EU 역내 법인 설립 여부나 수출 경로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갖는 의무(설계, 디지털 제품 여권 마련, 적합성평가, CE 마킹)를 모두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EU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해 공급하는 경우(OEM 등)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술문서·시험 성적서·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정보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재·부품 공급 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위임법령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BAM과 유사하게 원자재·재생원료 비율·유해우려물질·탄소발자국 등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을 것이다.

[표 9] 에코디자인규정 적용 대상 기업 유형별 영향(EU CBAM 적용 대상 기업 유형 활용)

구분	유형 1 (EU 직접 출시 기업)	유형 2 (EU 브랜드 OEM 공급기업 등)	유형 3 (국내 소재·부품 공급 기업)
정의	• 자기 이름·상표로 EU에 출시하는 한국 생산자	• EU 브랜드 상표를 부착해 공급하는 한국 기업	• 유형 1, 2 기업에 소재, 부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
법적 의무	• 생산자 의무 전체 • 제품 설계, 디지털 제품 여권, 적합성평가, CE 마킹	• 직접 의무는 없으나 EU 브랜드가 생산자로 간주됨 (규정 제34조) • 우리 기업과 EU 기업 계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경우 관련 내용 대응 필요	• 공급망 행위자(규정 제38조) 의무 • 위임법령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예상되는 기업부담	• 디지털 제품 여권 시스템 구축, 제품 설계 등	• 설계변경,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디지털 제품 여권 데이터 요구 대응 등	• 원료성분, 재생원료비율, 유해우려물질, 탄소발자국 등 제공

※ 자료 : 에코디자인규정((EU) 2024/1781),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6. 마무리하며



본고에서는 에코디자인규정(ESPR) 도입과 추진경과, 개요와 주요 내용, 제도 이행 및 국내 관련 정책 동향, 기업 영향과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에코디자인규정 발효 후 2년이 제도의 기틀을 갖추는 단계였다면, 2026년부터는 실제 의무가 작동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미판매 의류·액세서리·신발 폐기 금지가 시행되었고,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부가 개시되었으며, 첫 제품군별 위임법령인 철강에 대한 위임법령이 연내 채택을 앞두고 있다. 2027년 이후에는 섬유, 타이어, 알루미늄 등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디자인규정의 핵심은 데이터이다. 에코디자인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디지털 제품 여권을 작성하는 것도, 미판매 소비재를 공시하는 것도 모두 제품 단위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기업은 이를 위하여 자사 제품의 소속 제품군·상품코드·적용시기와 생산자·수입자·OEM 공급자 중 자사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서 원료 성분·재생원료 비율·유해우려물질·탄소 배출량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수리가능성·재활용성을 반영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위임법령 초안이 공개될 때마다 업계 의견을 모아 EU에 전달하고, 국내 에코디자인 제도가 EU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중소기업의 데이터 산정·관리 역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단위에서의 데이터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판정 시스템인 FTA-PASS 내 품목분류·공급망 데이터 인프라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 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에코디자인규정은 규제이자 동시에 시장의 새로운 경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의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내구성과 친환경성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기업이 EU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